

행정법 총론 (재책형) - 「바이블 행정법」 양우형

문 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 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 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 ① 행정질서벌
- ② 통고처분
- ③ 과징금
- ④ 즉결심판

<해설> 통고처분의 기본 개념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이다. 위 예문은 헌재결정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통고처분제도는 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 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② 행정공무원에 의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③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④ 통고처분제도는 형벌의 비범죄화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이다」(헌재결 2003.10.30, 2002헌마275)(「바이블행정법총론」 p.577).

<정답> ②

문 2. 甲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후에 甲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지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A구청장은 甲의 영업을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에 甲의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甲은 A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구청장의 甲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 ② A구청장은 甲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로서 이에 대한 철회권도 갖고 있다.
- ③ A구청장은 甲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설> ③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대판 1990.9.11, 90누1786)(「바이블행정법총론」 p.430).

<정답> ③

문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대집행명장의 통지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두 가지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②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 ③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④ 현행 「건축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④ 개정 전의 건축법에 있던 내용이다. 이러한 건축법 규정과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여부가 논의되어졌으나 해당 규정의 삭제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바이블행정법총론」 p.90, 597).

<정답> ④

문 4. 행정소송에서 잠정적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구제(假救濟)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택하면서도 집행정지의 길을 열어 개인(원고)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② 집행정지결정 중 효력정지결정은 효력 그 자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원래상태와 같은 상태를 가져오지만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④ 「행정소송법」은 가처분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가처분제도를 긍정하고 있다.

<해설> ④ 행정소송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으나 대법원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판결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2.7.6, 92마54)(「바이블행정법총론」 p.879).

<정답> ④

문 5.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 ①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 ②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④ 상대방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해설> ① 법치행정의 중요한 두 기둥은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예견가능성-법적안정성-신뢰보호>라고 할 것이다. 양자는 법치행정의 동등한 구성요소로서 긴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동위설). ‘효율성’은 법치행정과는 관계없는 테마다. 사사건건 법치행정만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바이블행정법총론」 p.68).

<정답> ①

문 6.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한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사건에서 자연공원법령뿐만 아니라 허가와 불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환경영향평가법령도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의 근거법령이 된다고 판시하여 근거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②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 된다.
- ③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구제설)은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 이익인 경우에는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
-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④ 「원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1995.8.22, 94누8129)(「바이블행정법총론」 p.811).

<정답> ④

문 7.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강학상 구분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당선인의 결정
- ㄴ. 행정심판재결
- ㄷ. 영수증 교부
- ㄹ. 특허의 등록

- ① ㄱ - 확인
- ② ㄴ - 공증
- ③ ㄷ - 통지
- ④ ㄹ - 수리

<해설> ㄱ. 당선인의 결정 → 확인, ㄴ. 행정심판재결 → 확인, ㄷ. 영수증 교부 → 공증, ㄹ. 특허의 등록 → 확인(「바이블행정법총론」 p.258, 260)

<정답> ①

문 8.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재결을 할 수 없다.
-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사권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 다루어 왔으나, 최근에는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판례도 나타나고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제한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해설> 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재결사항)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안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바이블행정법총론」 강의보충프린트4. p.9) ②(○)대법원의 입장이다(「바이블행정법총론」 p.677). ③(○)대법원의 입장이다(「바이블행정법총론」 p.671). ④(○)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제도 관련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바 있다(「바이

불행정법총론」 p.669)

<정답> ①

문 9. 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면서 행정사건은 사법(司法)법원이 아닌 별도의 법원(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 ② 프랑스에 행정법원(재판소, Conseil d'Etat)이 출범하게 된 배경은 대혁명 이후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司法)법원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 ③ 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오늘날 행정법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판권은 통상의 사법(司法)법원이 행사한다.
- ④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행정에 특유한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사건은 별도의 행정법원(재판소)이 아닌 사법(司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해설> ③(×)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가 확립되고 보통법의 지배가 행해졌기 때문에 행정에 특수한 법체계인 행정법이 성립되지 못하였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다이시(Dicey)는 “영국에는 행정법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그러나 20C에 들어서면서 공공복리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권력통합적 기능을 갖는 (규제적)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는바, 이에 의하여 행정법이 성립·발전하게 되었다(「바이블 행정법총론」 p.35)

<정답> ③

문 10. 전통적 견해에서 허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② 허가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이미 허가한 영업시설과 동종의 영업허가를 함으로써 기존 업자의 영업이익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업자는 동종의 신규 영업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 된다.
- ④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③(×) 기존업자가 특허(새로운 권리의 설정)기업자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기존업자가 허가(자연적 자유의 회복)영업자인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것이 종래의 학설의 일반적 경향이였다(「바이블 행정법총론」 p.792).

<정답> ③

문 11.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 간의 구분 없이 실질적인 행정규칙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고시 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에 근거한 물품수출입공고 등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으로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구속력도 갖는다.
- ④ 고시(告示)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설> ①, ②, ③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린 지문이다. ① (×)대법원은 대통령령의 형식을 취한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으로 보고있다(「바이블행정법총론」 p.193~196). ②(×)모두 법규명령이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행정규칙임에 주목한다(「바이블행정법총론」 p.169~171, 196). ③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바이블행정법총론」 p.190). ④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이다(「바이블행정법총론」 p.836, ②8번 판례, p.839, ④0번 판례).

<정답> ④

문 12. 다음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을(를)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을(를)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 ① ㉠ - 신뢰보호의 원칙
- ② ㉡ - 상대방
- ③ ㉢ - 법률에 의한 구속
- ④ ㉣ - 대외적인 구속력

<해설> ③(×)법률에 의한 구속 → 자기구속. 헌법재판소 결정(헌재결 1990.9.3, 90헌마13) 일부가 그대로 출제됨(「바이블행정법총론」 p.88)

<정답> ③

문 13.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람
-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③ 대통령이 직접 행하는 처분사항
- ④ 심사청구·해양안전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해설> 행정절차법 제3조 내용임(「바이블행정법총론」 p.437)

<정답> ③

문 14. 지방자치단체인 A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인 B는 납세의무자인 D의 허위신고를 묵인하고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청구를 한 주민 C가 60일이 경과해도 감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은?

- ①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② 공법상 당사자소송
- ③ 항고소송
- ④ 민중소송으로서의 주민소송

<해설> ④ 민중소송 중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 ***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감사결과 등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7조)(「바이블행정법총론」 p.927).

<정답> ④

문 15.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안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일간지에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甲은 의료취약지인 B군(郡)에서 병원을 설립·운영하였으나, B군수는 「지방세법」규정에 근거하여 甲에 대해 군세(郡稅)인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한분장관계상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

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는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 ② 사안 : 甲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을 것을 신뢰하고 그에 기해 일정한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甲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거부당하였다.

검토의견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 ③ 사안 : 건축주 甲은 건축사 乙에게 건축설계와 신청행위를 의뢰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건축한계선을 위반 하였고 이로써 철거명령을 받게 되었다.

검토의견 : 甲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乙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다.

- ④ 사안 : 甲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검토의견 : 甲은 위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해설> ①(×)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표명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바이블행정법총론」 p.61).

②(○),④(○)두 사례는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잘 비교해 봐야하는 판례로서, ②번 사례의 경우에는 애초의 적정통보와 관계없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이 거부처분의 대상이었다는 점이, ④번 사안의 경우에는 애초의 적정통보와 같은 법률에 근거를 둔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이 거부처분의 대상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바이블행정법총론」 p.62, p.386).

③(○)대판 2002.11.8, 2001두1512 (「바이블행정법총론」 p.71)

<정답> ①

문 16. 행정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하는 때에도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불필요한 것이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신고는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을지라도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유효하다.

- ③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은 수리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적법성의 하자를 이유로 수리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를 말하며 실정법상 등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해설> ② (×).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신고체육시설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영업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이에 반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4.24. 97도3121)(「바이블행정법총론」 p.153).

①(○)2010년 11월과 2011년 1월에 「건축법상의 신고」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나왔으나 이 판결들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직 학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따라서 ①번 지문이 혹시 틀린 지문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으나, ‘원칙문’으로서 옳은 지문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틀린 지문임이 분명한 ②번 지문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정답> ②

문 1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 및 판례에 의함)

- ① 준법률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다.
- ② 해제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의 부관계는 달리 독립하여 그 자체에 대한 행정쟁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부관을 행정행위 당시가 아니라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후에 새로이 붙일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비록 법령에 근거가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④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일지라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행위 철회시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 종래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붙여질 수 있고,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고 설명되어 왔는데, 이는 부관은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붙이는 것이므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바이블행정법총론」 p.276). ②(×) ‘해제조건’ → ‘부담’

③(×)사후부관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제한적긍정설입장이다. 즉,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i)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ii)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iii)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iv)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5.30, 97누2627). (「바이블 행정법총론」 p.280). ④(×)철회권의 유보는 신뢰보호원칙의 원용을 제한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바이블행정법총론」 p.275)

<정답> ①

문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허가청으로부터 B간판에 관하여 설치허가를 받았다. 설치기간은 2011. 3. 1. 부터 2013. 2. 28.까지로 하기로 하였다. A는 2013. 4. 1.에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허가청은 B간판이 2013. 4. 1. 현재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규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하였다.

- ① 허가의 갱신신청은 달리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도래한 후에 할 수도 있다.
- ② 2013. 2. 28.이 지나면 종전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③ 종전의 허가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허가는 일반적으로 갱신허가에 해당한다.
- ④ 허가청이 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해설> ①(×),②(○)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대판 2007.10.11, 2005두12404). (「바이블행정법총론」 p.271). ③(×),④(×)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5.11.10, 94누11866). (「바이블행정법총론」 p.246)

<정답> ②

문 19.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 학술행사 참석차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학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 ③ 정보공개가 결정되고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구술로도 공개할 수 있다.
- ④ 정보공개 관련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재판장은 필요시 당사자 없이 비공개로 해당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해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3.11, 2001두6425). (「바이블행정법총론」 p.483)
 ③(○)정보공개법 제16조 3호(「바이블행정법총론」 p.491)

<정답> ②

문 20. 다음은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을(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을(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을(를) 부과하는 행위

- ① 가산금
- ② 과태료
- ③ 부당이득세
- ④ 이행강제금

<해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제2조 제1호 (「바이블행정법총론」 p.580)

<정답> ②